

##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
전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14호  
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8호  
(지방공무원 정원조례)  
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30호  
(시세 기본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24호  
일부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97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30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26>

**제2조(지급대상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 11. 25, 2020. 9. 28>

1.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
2.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
3.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
4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 
(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

5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
  6.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이 조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 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4호에서 “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”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,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
  2.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
- ③ 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9. 28>
- 제3조(지급기준)**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 <개정 2020. 9. 28>
-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.
1.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  2.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  3.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  4.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(“미등기 취득”이란 “을”이 “갑”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“병”에게 매도하여 “갑”에서 “병”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“을”의 취득을 말한다)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
  5. 납세의무 발생일(등기일 포함)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

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
6. 도로, 하천, 공유수면 및 국·공유지의 무단 점용을 적발·제보하여 점용료·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  7.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. 다만,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8.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
- ③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.
- ⑤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급대상은 해당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추진 중 적발 또는 발견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다만,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하여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4조(지급한도)**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11. 25, 2020. 9. 28>

1.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(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. 다만, 제2조제1항제4호의 임기제 공무원(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)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조(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**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
2.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
3.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

4.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여부

5.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예산과장·자치행정과장·희망복지과장·민생경제과장이 된다. <개정 2015. 6. 1, 2017. 4. 3, 2018. 2. 9, 2018. 12. 26, 2019. 9. 30, 2025. 7. 1, 2025. 11. 20>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⑦ 소속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대장비치)** 세입금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포상금 지급신청)**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부서별로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한다.

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목 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8조(포상금 지급)**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호에 따르며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0. 9. 28>

**제9조(환수)** ①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28>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3. 11. 25 조례 제1328호, 지방공무원 정원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생략

②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”을 “별정직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계약직 공무원(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포함)”을 “임기제 공무원(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)”으로 한다.

**부칙** <2015. 6. 1 조례 제13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⑯ 까지 생략

⑦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복지정책과장”을 “희망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⑯ 까지 생략

##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
**부칙** <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③까지 생략

④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관”을 “기획예산관”으로 하며,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④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7. 12. 26 조례 제1630호, 시세 기본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로 한다.

**제3조** 생략

**부칙** <2018. 2. 9 조례 제164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일자리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⑧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8. 12. 26 조례 제16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생략

②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기획예산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②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9. 9. 30 조례 제173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

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**

⑤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②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20. 9. 28 조례 제18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5. 7. 1 조례 제22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5조제4항 중 “일자리정책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생략

**부칙** <2025. 11. 20 조례 제233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**

⑩ 「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,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민생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⑯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

## 회 의 록

년도 제 회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			
개최일시	년 월 일 ( )	장 소	
참석현황	재적위원 : 명, 참석위원 : 명, 불참위원 : 명		
주요안건			
의 결 내 용			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:원)

일련 번호	정 수 자		체 납 자			정 수 내 역						정 수 확 인 (담당)	포상금 청 구 지급액	지급일
	직급	성명	주소	성명	주민등록 번 호	연도 기분	납기	과세 번호	세목	징수액	징수 일자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:원)

일련 번호	부과자(제보자)			과목	구분	발굴 세원	납세 의무자			징수액	징수 일자	징수확인 (담당)	포상금 청 구 지급액	지급일
	직급 (주소)	성명	주민등록 번 호				주소	성명	주민등록 번 호					

- (주) 1. 구분란에는 과표초과, 미등기, 등기 1년 초과 내지 년 초과,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 
 2. 발굴세원에는 과세대상을 기재할 것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##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
### □ 세입 징수내용

(단위 : 원)

구 분	건수	징수액	포상금	비 고
합 계				
체납액 정 수	1년차			
	2년차			
	3년차 이상			
숨은세원 발 굴	미등기전매			
	1년 경과 등			
	무단점용 등			
	과표초과			
기 타				

## □ 포상금 수령계좌

## ○ 금융기관 :

○ 계좌번호 :

붙임 : 1.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(부표 1)

## 2. 숨은 세원 빨굴 과정내역 1부 (부표 2)

3.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

「오산시 지방세입 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### 신청인      소 속(주 소) :

직급(주민등록번호) :

성명 : (인)

## 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] 제4호서식 부표 1]

##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

(단위:원)

징수자			징수내역					체납자			포상금
소속 직급	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도 (과세번호)	납기	세목	징수액	징수일자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

(주)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

[별지] 제4호서식 부표 2]

## 숨은 세원 발굴 과정내역

(단위:원)

부과자(제보자)			구분	징수내역					납세의무자			징수 확인(담당)	포상금
소속(주소)	성명	주민등록번호		연도 과세번호	납기	세목	징수액	징수일자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

- (주) 1. 구분란에는 과표초과, 미등기, 등기 1년 초과 내지 년 초과,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 
 2.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